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6
----------	-----------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견 청취 현실화(안 제7조제2항)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변경(안 제15조)
-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적용 기준 완화(삭제 안 제17조)
- 라. 법령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안 제21조제1호)
- 마. 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 바. 이행보증금의 산정 방식 명확화(안 제30조의2)
- 사. 1·2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통합(안 제33조 및 제40조)
1·2종 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통합(안 제35조 및 제40조)
- 아. 생산녹지에서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50→60퍼센트)
(안 제53조제2항)
- 자. 농공단지(60→70퍼센트) 및 산업단지(70→80퍼센트)건폐율 완화
(안 제54조제4호 및 제5호)
- 차.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안 제58조제11호 ~ 제13호)
- 카.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신설(안 제59조)
- 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61조의2)
- 파.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안 제31조 및 별표 6부터 10까지 및 별표 13, 별표 19)
- 하. 계획관리지역내 창고시설(일반창고 등) 허용
- 거. 그 밖에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 및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03. ~ 7.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에서”를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을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및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24조 중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을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

제2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제19호의 “있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 한다

제33조 제목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 한다

제35조 제목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법 제 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한다.”를 “법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로 한다.

제40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43호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 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8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소”를 “갯생보호시설”로 한다.

제49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소”를 “갯생보호시설”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지방정부가”를 “경상남도나 군이”로 한다.

제51조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0%”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한정한다)”를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를 “퍼센트”로 한다.

제54조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56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1”을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제60조 본문 중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제7항에 따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7항이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중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의”를 “자문”으로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제6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를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2조 본문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5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별표 3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8부터 별표 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u>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u>,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u>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u> 6.(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p> <p>-----</p> <p>-----</p> <p>-----</p> <p>----<u>국토교통부장관</u>-----</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삭 제> 6.(현행과 같음) 7.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이하“<u>시행규칙</u>”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p>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 7. (생략) 	<p>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7. (현행과 같음)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 「<u>건축법</u>」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u>건축법 시행령</u>」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p> <p>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p> <p>3. 토지의 형질변경</p> <p>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p> <p>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p> <p>4. 토석채취</p> <p>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p> <p>5. 토지분할</p> <p>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 5. 25)</p> <p>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p> <p>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집중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p> <p>라. 토지의 일부가 균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지</p>	<p><삭 제></p>
<p>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삭 제></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 1. ~ 2. (생략) 3. 군수가 별도 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생략) ② (생략)</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p>	<p>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어느 하나에----- ----- -----</p>

현 행	개 정 안
<p>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p> <p>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p> <p>2. ~ 3. (생략)</p> <p>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p> <p><신 설></p>	<p>----- ----- ----- ----- -----</p> <p>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p> <p>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p> <p>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p> <p>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p> <p>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p> <p><신 설></p>	<p>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 ----- -----어느 하나에-----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p> <p>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p> <p>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에 따른----- ----- -----에 따른----- -----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 5. (생략)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 12. (생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 23. (생략)</p>	<p>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없는 7. ----- 없는 8. ----- 없는 9. ----- 없는 10. ----- 없는 11. ~ 12. (현행과 같음) 13. ----- 없는 14. ~ 18. (현행과 같음) 19. ----- 없는 20. ~ 23. (현행과 같음)</p>
<p>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생략) 	<p>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3. (현행과 같음)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p>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종 근린생활 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 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13. (생략)</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15. (생략)</p>	<p>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p> <p>--자원순환 관련 시설</p> <p>15. (현행과 같음)</p>
<p>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5. (생략)</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7. (생략)</p>	<p>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자원순환 관련 시설</p> <p>7. (현행과 같음)</p>
<p>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13. (생략)</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15. (생략)</p>	<p>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p> <p>-자원순환 관련 시설</p> <p>15. (현행과 같음)</p>
<p>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p>	<p>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p> <p>-----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14. (생략)</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교도소</p> <p>나. <u>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u> 그 밖에 범죄자의 <u>갱생·보육·교육·보건</u>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p> <p>17. (생략)</p>	<p>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p> <p>-----</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p> <p>- <u>자원순환 관련 시설</u></p> <p>16. -----</p> <p>-----</p> <p>가. -----</p> <p>나. <u>갱생보호시설</u>-----</p> <p>-----</p> <p>17. (현행과 같음)</p>
<p>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p>1. (생략)</p> <p>2. 국가 또는 <u>지방정부가</u>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u>군계획시설</u>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p>	<p>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경상남도나 군이</u>-----</p> <p>-----</p> <p>-----</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u>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u>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u>」 제6조제3항에 따라-----</p> <p>-----</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1. (생략)</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50% 이내로 한다.</p> <p>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p> <p>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p> <p>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내로 한다.</p>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라-----</p> <p>1. ~ 21. (현행과 같음)</p> <p>② -----</p> <p>-----60퍼센트-----</p> <p>1.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p> <p>2. -----제5항제1호-----</p> <p>③ -----</p> <p>-----군계획시설-----</p> <p>-----퍼센트-----</p> <p>-----퍼센트-----</p>
<p>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p> <p>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p> <p>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70퍼센트 이하</p>	<p>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자연공원-----</p> <p>4. -----에 따른-----</p> <p>-----70퍼센트-----</p> <p>5. -----</p> <p>-----에 따른-----</p> <p>-----80퍼센트-----</p>
<p>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에 따라-----</p> <p>-----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에 따라-----</p>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생략) ② 제6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p> <p>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③ 제1항에 따른-----</p> <p>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 ----- ----- -----</p>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삭 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나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 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지식산업센터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나목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마목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가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단,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3 제9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시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동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9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자동차여객터미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 설비는제외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호 가목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생산농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시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 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참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차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 차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중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호 내지 제12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료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물 시행령」 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별표18 제5호 및 별표19 제11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